

2014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하는 '2014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14억원, 800업체 내외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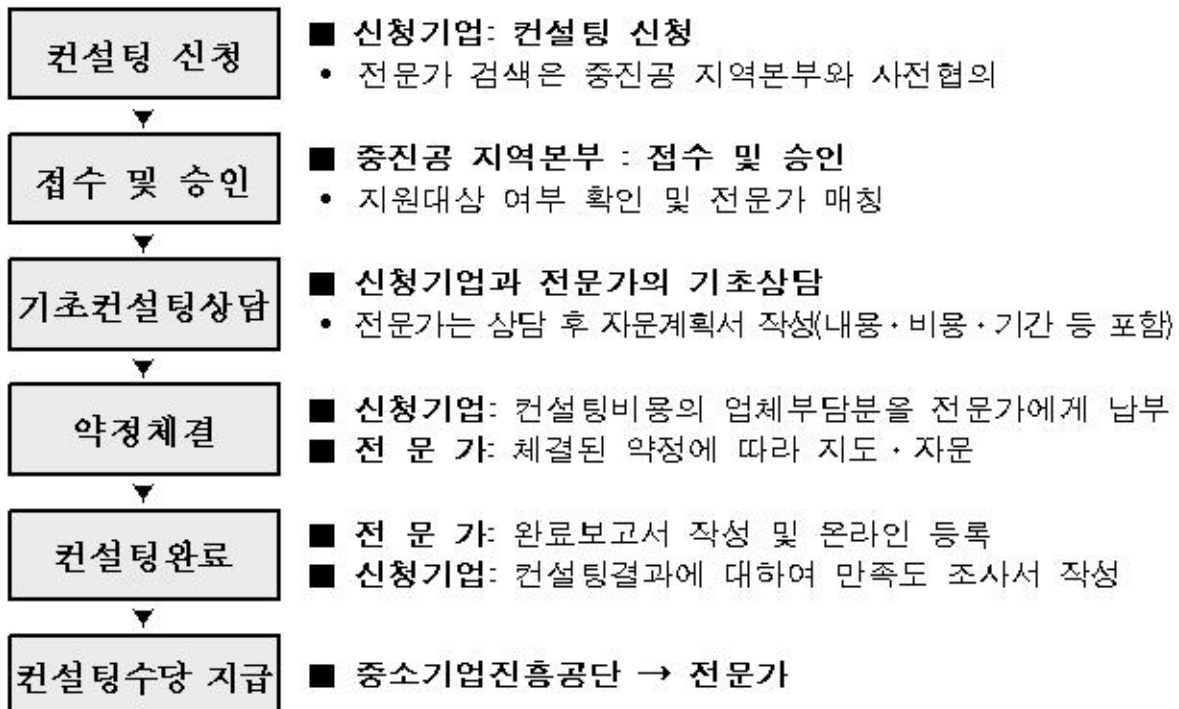
구분	FTA·수출컨설팅	
지원대상	FTA 컨설팅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출 컨설팅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연계(FTA+수출) 컨설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컨설팅내용	FTA 컨설팅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 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 컨설팅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등
지원한도 (1차)	FTA 컨설팅	FTA컨설팅 : 6일 이내
	수출 컨설팅	수출컨설팅 : 3일 이내
	연계컨설팅	FTA 및 수출컨설팅 연계 : 8일 이내
중복지원 (2~3차)	지원대상	1차 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며,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 : 신시장진출, 신규상품 수출 등)
	지원 회수	3회까지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각 지역센터포함) 및 관세청 컨설팅을 포함]
	중복지원 한도	2차 : FTA4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6일 이내 3차 : FTA3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5일 이내
업체분담금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3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3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2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10억이하 : 무료, 1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초과 : 30%	

3. 신청절차

○ 중소기업 FTA 및 수출애로 자문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4. FTA·수출전문가 등록

- **[신규신청자격]** 다음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FTA수출자문이 가능한 자

구분	자격요건
FTA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세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관세사회에 등록된 자 ② 원산지관리 교육을 이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수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 종합상사,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해외 지사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무역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 ▷ 무역업무 또는 중소기업 수출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특정분야의 자격증 및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관세사, 회계사 등)

- **[신청방식]**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수시접수)
- **[자격심사]** 매분기별(3·6·9·12월) 경력 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자격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자문신청서, 계약서, 결과보고서 등은 별지의 양식을 참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락처

부서	전 화	팩 스	주 소
글로벌사업처	02) 769-6957	02) 769-6720	(우150-71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서울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2) 6678-4115	02) 6678-4199	(우158-051) 서울 양천구 목1동 9176
인천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32) 450-0533	032) 442-3236	(우406-840)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경기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31) 259-7904	031) 259-7901	(우443-76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강원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33) 259-7634	033) 256-9614	(우200-042)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대전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42) 866-0153	042) 866-0148	(우305-34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충남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41) 621-3675	041) 621-3689	(우331-230)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충북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43) 230-6833	043) 230-6888	(우361-8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상로 50
전북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63) 210-9911	063) 210-9988	(우561-736)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대구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53) 601-5262	053) 601-5301	(우702-010)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3길 90
경북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54) 476-9312	054) 476-9319	(우730-350)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광주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62) 600-3051	062) 956-7518	(우506-301)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전남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61) 280-8040	061) 280-8080	(우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부산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51) 630-7404	051) 646-0502	(우617-801)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울산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52) 703-1132	052) 703-1190	(우680-815) 울산 남구 삼산로 274
경남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55) 212-1373	055) 212-1366	(우641-2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제주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64) 751-2054	064) 751-2058	(우690-732)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별지 제1호 서식】

컨설팅 신청서

FTA컨설팅

수출컨설팅

1. 회사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대 표 자 E-mail		
주생산품		표준산업분류		
주 소	본사 (-)	전화		
		팩스		
	공장 (-)	전화		
		팩스		
사업인자경로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신문등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지인 소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설 립 일	종업원수	명	자산총액	백만원
매출액(전년도)	백만원	총수출액 (전년도)	천불	
담당자E-mail	홈페이지			
담 당 자	성명 :	직 위 :	TEL	

2. FTA·수출 관련 사항

수출 품목	
수출 국가	

3. FTA·수출 지도자문 의뢰내용

◦ 신청분야 :
◦ 신청내용(구체적으로)
-
-
-

4. 희망 FTA·수출전문가

--

【별지 제2호 서식】

컨설팅 활동 계획서

- 전 문 가 :
- 컨설팅기간 :
- 컨설팅분야 :

자문기간	자 문 내 용	컨설팅방식	자문비용
계			

- ▲ 컨설팅방식 : 방문상담, 이메일 자료제공, 전화상담 등
- ▲ 컨설팅비용 : 자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컨설팅비용 부담내용

(단위 : 원)

총비용	업체부담	정부부담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컨설팅 계약서

1. 지원기업명 :
2. 수행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일간)
3. 총사업비(자문비용) : 일금 원(W)
(VAT발생시 지원기업부담)
 - 정부 지원금 : 일금 원(W)
 - 지원기업부담금 : 일금 원(W)
4. 컨설팅 제목 : _____
5. 지원기업은 자문 계약일 이후 3일내에 지원기업 부담금을 전문가가 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6. 전문가는 자문완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지원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며, 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문가는 최초보고서 제출일 이후 10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 업체 분담금 리베이트, 정부보조금 유용,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 취소, 기 지급된 정부보조금 환수, 신규참여제한 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8. 이 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2014년 월 일

○ 계약 당사자

- 지원기업 : _____ (대표) _____ (인)
주 소 : _____
- 전문가(소속): _____ (인)
주 소 : _____

【별지 제4호 서식】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턴트 (소속)		수행일자	___일간 (2014. . . ~ 2014. . .)
지원기업명		진단제목	

일자	수행업무내용	비고
1일 차 (. .)		
2일 차 (. .)		
3일 차 (. .)		
4일 차 (. .)		
5일 차 (. .)		
6일 차 (. .)		
7일 차 (. .)		
8일 차 (. .)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 201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FTA컨설팅 완료보고서

보고일자	2014. .					
지원분야	원산지 판정					
업체방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출장자A						
출장자B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결과 보고서

(업체명 :)

컨설턴트 (보고자)	소 속	성 명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결과 보고서

1 업체 개요 및 신청품목 분석

□ 업체 개요

- 회사명
 - 한글 :
 - 영문 :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번호 :
- 무역업고유번호 :
- 소재지
 - 본사 :
 - 공장 :
- 주생산품 :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00%)
- 업종 :
- 상시종업원수 : 명
- 수출국가 :
- 수출형태 :

(최근년도 결산기준,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수출액		

□ 컨설팅 개요

○ 신청일 : 월 일

○ 개요 :

□ 신청품목 분석

품명	규격(모델)	HSK	주요 수출국
주요 원자재			
품명	HSK	설명	

적용대상 협정 검토

- 검토대상 : 개 협정()
- 검토제외 : 개 협정()

 기본원칙 검토

구 분	미국	EU	검토의견(미국, EU)
직접운송원칙			
불인정 공정			
완전생산			
역내가공			

* 해당인 경우 O, 비해당인 경우 X 표기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HS Code :)

FTA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유형	
한-EU FTA	유형	
검토의견		

 FTA 협정별 관세혜택(효과)

FTA 협정	HS Code	기준세율	협정세율	효과
한-미 FTA				
한-EU FTA				

* FTA협정 상대국의 기준세율과 협정세율을 '13년 기준으로 표기

3-A**현장방문 컨설팅 결과****[A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판정근거

- 주요 원재료

순번	품명	HSK	조달 경로	원산지	원산지 증명서류
1					
2					
3					
4					
5					
6					
7					
8					
9					
10					

- 재료비 가치 산정

순번	원재료	역내산 여부	구매 국가	완제품 1EA당 원재료 투입량	단위	원재료 투입금액(KRW)	원산지증명서 수취 여부
1							
2							
3							
4							
5							
6							
7							
8							
9							
10							

* 부가가치기준은 역내부가가치비율(집적법,공제법,순원가법)이 있고, 역외부가가치비율(MC법)이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FTA 협정	기본원칙충족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판정결과

* 해당인 경우 O, 비해당인 경우 X 표기

□ 현장방문 컨설팅 결과

세번변경기준 판정결과		
FT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부가가치기준 판정결과		
FT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결과 의견		
- DATA 정합성 문제 : - 원산지판정 대상품목의 매출관련 정보 : - 재료지 관련 정보 :		

□ 종합 의견

* 컨설팅을 수행한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3-B

현장방문 컨설팅 결과

[B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품목

품명	HS Code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6단위 기재			

수출 또는 생산품목의 원산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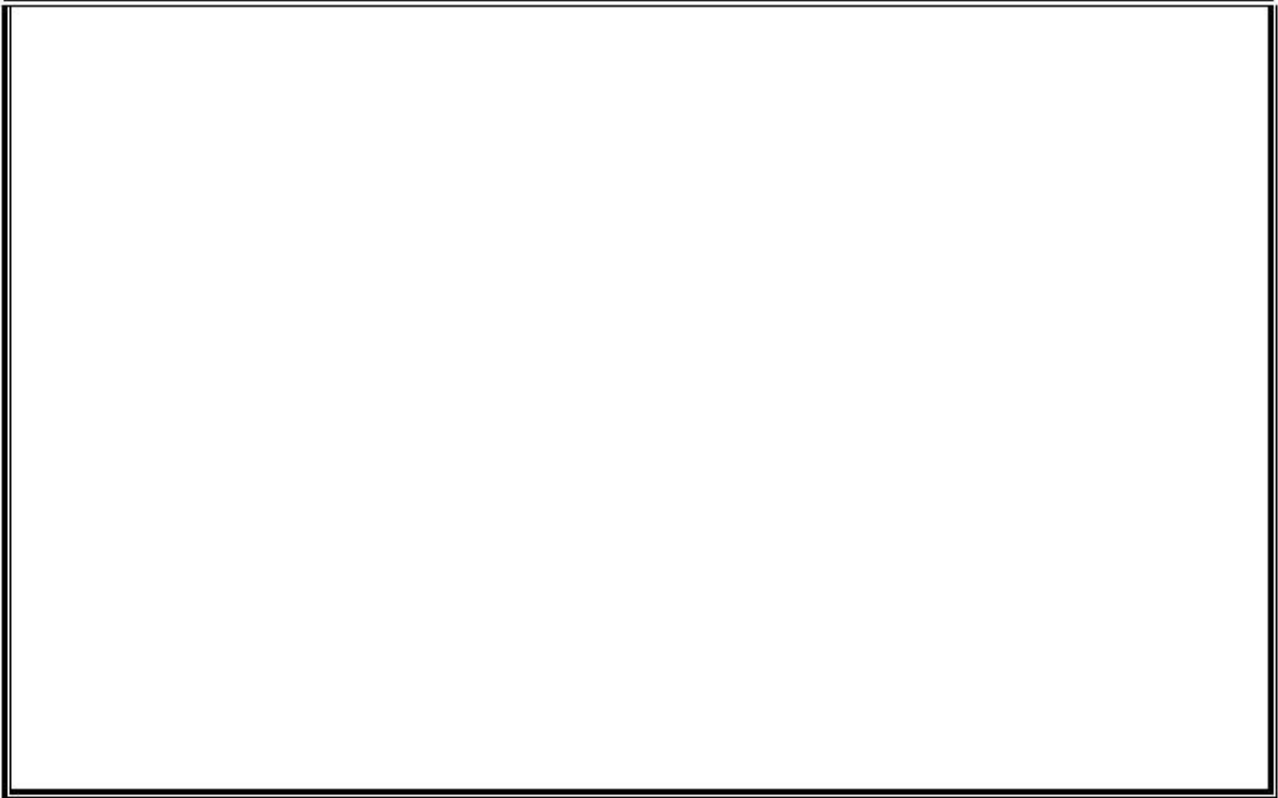
구분	관리여부	주요내용
1. 전산시스템 활용		
2. FTA 원산지 업무메뉴얼		
3.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인원수)		
4.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요건 유지		
5.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외부 전문가인 경우 계약기간 경과		
6. 수출품목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7. 중간재로 지정된 상품의 직접생산 여부		
8. 지정된 중간재의 원산지기준 충족		
9. 제조공정도 구비		
10. 생산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수행		
11. 제조 공정도의 작성일자, 작성자 기재		
12.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13. 원산지별로 재고관리		
14.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관리기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15. 완성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 관리		
16. 상품가격이 협정에서 정한 가격기준(EXW 또는 FOB)으로 관리		

□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구 분	관리여부	주 요 내 용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서명권자 지정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당해품목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당해품목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 현장방문 컨설팅 개선·보완사항

□ 종합 의견



3-C

현장방문 컨설팅 결과

[C 원산지 검증]

□ 검증대상품목

품 명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수출국	비고
	6단위 기재			
관련 협정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검증사항

구 분	검증결과	주 요 내 용
1. 원산지증명서의 요건(HS Code, 원산지기준, 표기사항 확인 등)		
2.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3. 원산지소명서의 요건(HS Code, 원산지기준, 표기사항 확인 등)		
4. 수출품(생산품)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수출품목 기준가격 적정성		
6. 수입원재료 기준가격 적정성		
7. 재고관리기법의 적정성		
8. 누적대상품목 및 누적방법		
9. 중간재의 원산지 적정성		
10. 원재료의 원산지 적정성		
11. 재료별 공급자 및 생산자 확인		
12. (협정별)재료별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3. 직접 운송 원칙		

14. 충분가공기준 충족여부(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및 불인정공정 여부 포함)		
15. 원재료의 원산지 및 HS Code, 품명, 규격, 소요량 확인		
16. 수출시 한국 HSK 확인		
17. 국내 협력업체의 HS Code 적정성 확인		
18. 미소기준 적용여부		
19.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20. 당해품목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21.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22. 당해품목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 검증결과

원산지 결정기준	
-------------	--

□ 현장방문 컨설팅 개선·보완사항

--

3-D 현장방문 컨설팅 결과

[D 원산지 관리시스템]

□ 대상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공급기관	업체 설치 연도	연간유지비용	비고
협정국 활용정도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활용정도	<input type="checkbox"/> 초보 <input type="checkbox"/> 중급 <input type="checkbox"/> 고급			

□ 지원사항

구 분	지원여부	증빙자료(별첨)
1.회원가입		화면출력물
2. 시스템 관리 (사용자/서명권자, 권한관리, 기업정보)		
3. 기준정보 (거래처, 물품 및 재료, 자재명세서 관리, 원산지 기준관리, 생산공정)		소분류별 메인화면
4. 거래정보 (원가관리, 원산지근거서류, 완제품가격관리)		
5. 관정관리 (원산지관정, 원산지이력)		관정이력
6. 서류관리 (기관원산지증명서, 자율원산지증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확인서(송수신), 증명서 작성대장)		증명서 작성대장
7. 기타항목		

별첨 : 시스템 업로드 excel 파일

□ 기타 지원내용

--

현장방문 컨설팅 개선·보완사항

--

종합 의견

--

□ 권고사항

순번	구분	내역
1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2	서류 보관 의무	
3	HS Code 정합성 검토	

□ FTA 원산지관련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활용정도

--

□ 애로사항 및 기대효과

컨설팅 전 업체 애로사항	컨설팅 후 기대효과

□ 성공사례로 발전가능성

□ 비즈니스 모델

* 아래의 모델을 활용하여 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특혜관세 혜택, 수출선 다변화, 재료 매입 경로 다변화 등에 대해 제시, 가능하면 그래프 등 도식화된 자료로 제시

<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안) >

구 분	주 요 내 용
모델 1	FTA상대국 관세율 인하를 활용한 수출증대 : FTA 양허관세율 인하폭이 크고 신속하게 관세율이 철폐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켜 수출을 확대하는 방식
모델 2	FTA상대국에서 생산하여 특혜관세로 수출 :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 가공하여 생산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수출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방식
모델 3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 : FTA체결국産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원재료를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은 방식
모델 4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조달/생산 전환 : FTA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기존에 수입하거나 해외생산하던 공정을 국내조달/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식
모델 5	FTA 원산지업무관련 국내기업간 협력 : 수출기업(대·중견기업)과Supply chain상으로 연계된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간 원산지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함으로써 수출증대, 성과공유 및 경비절감하는 방식

** 기타 비즈니스모델은 기재부, 관세청, 무역협회 등 FTA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 활용 가능(FTA를 활용한 New Business 모델 및 사례(07, 무역협회), FTA활용핸드북(10, 기획재정부), 관세청 FTA 비즈니스 모델, 기타 전문가 저서 등)

【별지 제6호 서식】 수출컨설팅 완료보고서

수출컨설팅 완료보고서

보고일자	2014. .		
지원분야			
업체방문	1차	2차	3차
출장자A	.	.	.
출장자B			

1. 참여기업 현황

- 회사명
 - 한글 :
 - 영문 :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본사 :
 - 해외지사(법인) :
 - 공장 :
- 주생산품 :
- 업종 :
- 상시종업원수 : 명
- 수출국가 :
- 수출형태 :

(최근년도 결산기준, 백만원,천불)

구 분	금 액	비 고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수출액		

2. 컨설팅 주제 및 개요

- 기업의 컨설팅 니즈와 목적을 명확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기재
- 중소기업의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동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맞추어 컨설팅 추진방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기술

3. 세부추진 내용

- 컨설팅 수행절차 및 일정에 맞게 세부 수행내용 기술
-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필요시 별첨)

4. 컨설팅 성과 및 기대효과

-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른 성과내역 제시(컨설팅 전·후)
 - * 정량적·정성적 성과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방안

-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방안 제시
-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이행수준 점검, 실행계획의 수정 보완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향후계획 제시
- 컨설팅 내용과 관련된 정부지원정책 연계 방안 제시

【별지 제7호 서식】

업체 만족도 설문 조사서

업 체 명		담 당 자	
전문가명		실시기간	

1. 업체 만족도 조사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귀 업체는 자문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2. 귀 업체는 자문 후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습니까?					
3. 수출전문가가 자문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까?					
4. 수출전문가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에 만족하셨습니까?					
5. 수출전문가가 자문내용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까?					
6. 자문 시간과 자문 횟수는 적절하였습니까?					
7. 향후 수출애로 발생 시 이 사업을 다시 이용하시겠습니까?					
8. 타 중소기업에게 이 사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9. 자문료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수출 컨설팅 지원 사업 이용절차는 쉬웠습니까?					

2. 수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고 제일 불만족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 자문시간 미 준수
- 사전자료 준비미흡
- 불손한 언어와 태도
- 자문완료 보고서
- 별도의 경비 및 수수료 요청

3. 수출 컨설팅 지원 사업 중 개선해야할 점 또는 의견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